



인증번호 : 제2015-12-013호

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

1. 법 인 명 :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 주식회사
2. 사업자등록번호 : 305-86-26383
3. 대표자명 : 고 태 훈
4. 유효기간 : 2021.09.11.~2024.09.10.
5. 주 소 :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인삼약초공단로 15

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1년 9월 13일

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< 변경 사항 >

일 자	내 용	확 인
2021.9.13.	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갱신	농촌산업과

<인증의 갱신 신청 및 승계 신고>

※ 관련법령 :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」

법 제11조(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)

-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법 제13조(인증의 승계 등)

-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